

한국의 포토라인 문화: 알 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 — 판례를 중심으로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문제제기 : 왜 다시 포토라인인가?

당연시 여겼던 포토라인 앞 ‘잠시 멈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가 2019년 1월 11일 검찰에 출석하며 대법원 앞에서 ‘하고싶은 말’을 한 후 검찰청 현관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은 패싱해버렸기 때문이다.

포토라인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다. 취재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포토라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피의자 망신주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사회적 형벌로도 기능하고 있어 포토라인을 당장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 사찰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양손에는 천으로 덮인 수갑을 찬 채였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무죄를 떠나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선 것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여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론자들은 포토라인을 통해 밀실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 등을 차단하며 수사의 공식화, 공개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무분별한 취재경쟁의 질서를 잡고 피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3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과열된 취재경쟁 속에서 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가 2cm가량 찢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이듬해인 1994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등이 나서서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만들었다.

포토라인 시행준칙은 그로부터 거의 12년이 지난 2006년에 만들어졌다. 한국사진기자협회 등은 변화하는 취재환경에 적응,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만들었지만 시행에 따른 수정이나 보완의 기회없이 세월을 보내다 결국 포토라인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포토라인은 과연 초상권, 명예훼손 법익을 침해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인가.

2. 주요 연구를 통해 본 초상권과 포토라인 개념의 변천사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법적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는 인격권의 일부로 인정되며 보호받아왔다. 미국에서는 1902년 Roberson 사건을 계기로 뉴욕주 의회가 1903년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광고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뉴욕 민권법을 개정하였다.¹⁾

한국은 법적으로 초상권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제10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인격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방송심의규정에도 “방송은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

이처럼 초상권을 법과 규정 등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기본 이념과 그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초상권은 누구도 승낙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 촬영을 승낙했다라도 그 취지에 맞게 한정해서 사용당할 권리, 초상이 사진이나 동영상, 카툰 등 다른 형식으로 공표될 때 사전 허락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초상권 판례는 본인의 동의 없이 남의 초상을 서적에 무단게재한 데 대해 “신청인의 사진을 삭제한 후 발매하라”고 결정한 것이다.³⁾ 이 판례를 시작으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판례와 연구논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연구논문 “TV 카메라 기자를 위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안상운 변호사, 1997)는 국내외 초상권의 변천과 한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의 정립과 의의 등에 관한 내용은 초상권 보호법익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 안상운 (1997, 6월). <TV 카메라 기자를 위한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정기 세미나.

2) 방송심의규정 제31조 제2항.

3)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7.21. 선고 82가9623



이 논문은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 공적 인물(public figure), 공적 기록(public records) 등 세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공적 인물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을 토대로 공적 인물, 즉 대통령, 고위공무원, 배우, 가수 등 유명인의 경우 그의 사적사항이 공개되더라도 일반 사인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 환경 격동기 시대의 포토라인”(전평국 경기대학교 교수, 2006)은 1993년 1월 15일 정주영 전 통일국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두할 당시 카메라 기자들과 부딪혀 이마가 찢어져 상처가 나는 등 포토라인 제정 과정과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수사피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유중현 MBC 영상취재부장, 2004)는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판례와 사례를 주로 다뤘다. 유 부장은 국내 첫 프라이버시 관련 판례로 “소설 ‘이휘소’ 및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에서 이휘소는 물리학자로서 공적 인물임을 들어 유족들의 인격권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와 면책사유 등에 대한 사례를 분석했다. “수사피의자에 대한 취재의 문제점”(이종원 서울신문 사진부 차장, 2004)은 알 권리와 초상권이 사건현장에서 충돌하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이러한 취재, 제작 일선의 분석과 사례 연구는 영상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국내 처음으로 2006년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를 중심으로 ‘포토라인 준칙’이 제정됐다. 이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

“포토라인 붕괴 유형 및 사례”(신원건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2007), “포토라인 준칙 선포 1년, 현장은?”(정상보 SBS 영상취재팀 기자, 2007), “포토라인 준칙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박항구 이

슈아이 사진기자, 2007) 등은 포토라인 제정 이후 일선 취재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연구를 주로 보여준다. 제작 일선 기자들이 맞는 문제와 포토라인 준칙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한 연구물들이다.

이 가운데 “포토라인 준칙 개선방안”(문승재 APTN 선임프로듀서, 2007)은 제정 1년밖에 되지 않은 포토라인 준칙을 벌써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안은 일본처럼 준칙을 지키도록 강력한 징계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선안이 나온 후 10년이 흘렀는데도 현재 까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매체 경쟁시대, 한-일의 포토라인 제도 비교를 통해 본 한국 포토라인제도의 문제점”(나준영 MBC 보도국 영상취재부 기자, 2006)은 취재자 중심의 포토라인 제도가 구체적 원칙과 규정이 없이 파행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상풀(Pool) 제도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취재의 노력 없이 타사의 영상취재물을 자사의 취재물로 둔갑시켜 서비스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도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나 기자는 위 발제논문을 통해 “포토라인은 취재원의 권리와 취재 보도의 자유가 만나는 접점”이라며 일본의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의 법원은 30년 전 이미 ‘촬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촬영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려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방송과 언론사가 포토라인을 도입하고 정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일본헌법이 보장하는 적정절차(Due process)이다. 어떤 사람도 법이 정한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용의자이자 피고인으로서, 범인도 수형자도 아니며, 그에 따라 무죄, 무실의 가능성이 추정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 기자는 일본 언론이 포토라인을 개정, 보완하게 된 계기인 미우라 사건⁴⁾을 소개하며, “일본에서 취재원의 인권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취재 가능한 포토라인 내 도보구간의 거리는 최대 5m이고 보도진은 양 옆으로 최대 50m의 공간 내에서 취재원의 도보 행위 및 취재원이 탑승한 차량의 진행을 취재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⁵⁾

미우라 사건의 당사자 미우라 씨는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소송을 통해 보상받았다. 그는 방송사와 신문사 등을 상대로 총 48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시효가 지난 건을 제외하고 약 80%의 승소를 거두었다고 한다.⁶⁾

한편 국내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초기 연구를 기반으로 “영상저널리즘과 초상권”(류종현 교수, 2017), “언론분쟁에서의 초상권 관련 실무상 쟁점”(양재규 변호사, 2017), “판례에서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한 고찰”(조소영 교수, 2017) 등 다양한 분석과 연구논문이 나오고 있다.

4) 1981년 LA에서 발생한 사건. 재미교포 일본인인 피해자의 살인범으로 남편인 미우라 씨가 일본 언론에서 지목되어 10여 년간 재판과 실형을 거치며 인권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으로, 결국 미우라 씨는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일본판 O. J 심슨 사건으로도 불린다.

5) 앞의 나준영(2006), p.43.

6) 서형석 (1999). 일본의 최신 언론관계 소송 및 판례. <세계언론법제 동향>, 제6호, pp.102-116.

특히 “언론분쟁에서의 초상권 실무상 쟁점”(양재규 변호사, 2017)은 당시 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 장으로서 조정, 중재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양 변호사가 폭넓은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점이 돋보인다. 양 변호사는 <기자과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라는 저서를 발간할 정도로 초상권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포토라인이 취재제한선에서 공개적인 ‘모욕주기’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포토라인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일종의 사회적 형벌로서의 ‘모욕주기’”라고 해석했다. 그는 2017년 3월 19일자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하는 걸까’ 제하의 기사를 인용, “우리나라의 포토라인은 검찰이 부르면 죄인이고 영장 청구하면 유죄라는 인식과 그걸 놓치지 않고 특종 경쟁을 하는 언론이 빚어낸 ‘진풍경’임은 분명”하다고 했다.⁷⁾

범죄혐의로 인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법적으로야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된다. 이른바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포토라인이 사람들이 ‘유죄추정’을 하게끔 한다는 반론이 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장면이 보도되는 순간, 사람들의 뇌리에는 ‘저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강한 인상이 새겨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포토라인에는 일종의 사회적 형벌로서 ‘모욕주기’라는 새로운 함의가 부여된다.

이처럼 포토라인이 일종의 사회적 형벌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포토라인의 인권침해적 측면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이진국은 “특히 정치적 성격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기관이 여론재판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토라인이 인권침해의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행해지기 이전의 포토라인에서의 촬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⁸⁾

언론계 내부에도 포토라인의 인권침해적 측면에 동의하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나준영(2006)은 “지난 10여 년간 포토라인 제도가 실행되면서 취재원의 인권과 인격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문제점, 그리고 취재자들 스스로 취재편의를 위한 다양한 편법을 만들어 온 현실이 대중들로 하여금 이 제도의 정당성과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포토라인은 ‘기자들만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편의적 장치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⁹⁾

TV 방송 등 매스컴에서 초상권을 침해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대개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초상권이 보호받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판례로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한다.

7) 윤호진 (2017. 3. 19).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드시 '포토라인'에 서야하는 걸까. <중앙일보>.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1383303>

8)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98.

9) 앞의 나준영(2006)

10) 앞의 안상운(1997)



- ① 초상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¹¹⁾
- ② 타인의 주거를 무단침입하여 초상본인 몰래 촬영한 경우,¹²⁾
- ③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초상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¹³⁾
- ④ 타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제한 경우¹⁴⁾
- ⑤ 정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계없는 사진을 제공받아 게재한 경우¹⁵⁾
- ⑥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¹⁶⁾
- ⑦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¹⁷⁾
- ⑧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¹⁸⁾

SNS의 일반대중화, 유튜브의 활성화와 1인 미디어 시대라는 매체환경 변화 속에서 포토라인과

1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30. 선고 93나31886호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얼굴사진을 찍고 ‘돈의 노예들’이라는 부제를 달아 이를 잡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12)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호 판결
 “월간잡지의 ‘압구정동 문화의 실체를 벗긴다’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 원고 3명이 함께 걸어가는데 같은 또래의 젊은 남자가 말을 붙이는 듯이 보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삽입되어 있는 바, 이는 이를 본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진에 나타난 원고들이 위 기사에서 향락적, 소비적, 무절제적으로 묘사된 속칭 ‘오렌지족’이거나 그러한 ‘오렌지족’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오렌지족의 유희대상이 되고자 하는 젊은 여자들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원고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다.”

13) 서울고등법원 1992. 8. 20. 선고 91나 64670호 판결
 “서울올림픽 성화봉송행사장면 사진을 피초상자의 동의없이 타인이 사적인 연하카드에 사용한 것은 그에 대한 초상권 침해이다.”

14)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선고 89나36528호 판결

15)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호 판결

16)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9. 9 선고 87가합6032호 판결

17) 수원지방법원 1993. 4. 20. 선고 92가합9602호 판결

1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 17. 선고 90가합15896호 판결

관련해 알 권리와 초상권, 프라이버시 간 갈등 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복합적 갈등관계를 증명하듯 최근 법원 판결도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다.

3. 쟁점 : 1, 2심 판결문에 나타난 포토라인과 초상권 쟁점

포토라인은 한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명분하에 만든, 전세계에 유례가 드문 일종의 한국적 제도다. 포토라인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언론사의 무질서한 취재를 막고 공적 인물의 수사를 공식화, 공개화하는 선언적 함의를 지닌, 수사기관과 언론사가 맺은 일종의 신사협정의 산물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준칙을 만들어 이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한국카메라기자협회 등은 포토라인 준칙을 만들어 동시에 시행 기준으로 삼고 있다.¹⁹⁾ 포토라인은 개별 언론사나 기자가 취재, 접근하기 힘든 유명인이나 공적 인물을 공개리에 소환하여 밀실수사나 비밀소환, 봐주기 수사를 차단하는 투명한 수사의 공식화를 내포하는 공표지점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상징이 됐다고 본다.

배우 전모 씨의 동행인 소송 사건에서 1심 판결문은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 임의로 만들어진 포토라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 ▲ 포토라인 앞에 선 것만으로는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카메라를 보며 포즈를 취하는 등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불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 ▲ 취재진 앞에 서서 카메라를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초상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문에서 달라진 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2심 판결문 중 관련 부분을 인용, 해석한 결론이다.

- ▲ 포토라인은 취재, 촬영이 예정된 공개적인 장소이며 수사기관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된 취재경계선으로 동행자의 각별한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 소환된 자와의 의무동행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취재진이 포진한 포토라인에 서는 등 촬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 포토라인에 잠시 한발 비켜서는 정도, 모자를 쓰는 정도의 소극적 촬영거부 정도로는 명시적 촬영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배우 전 씨가 차를 타고 내리는 등 그와 동행하는 동안 본인이 촬영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¹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8조에 따르면 소환대상자가 공적 인물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죄명 등의 정보 공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포토라인에 들어오는 동행자는 스스로 촬영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아예 그런 곳은 접근하지 않는 적극적 자기방어행위를 해야 촬영거부 의사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 포토라인에 서서 배우 전 씨가 발언하는 동안 고개를 들고 서 있거나 촬영을 의식해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는 등의 행위는 촬영거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포토라인을 둘러싸고 초상권의 보호 범위와 법적 판단의 해석 기준이 달라진 점은 이처럼 분명한 만큼 언론사도 피보도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2심 판결은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피보도자의 주의의무, 언론사의 보도방식 등에 대해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2019년 초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포토라인 이슈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과 언론은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이나 강령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

법원과 검찰의 대체적인 입장은 ‘없어야 한다’는 편이다. 굳이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더라도 누가 언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공개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차원에서 포토라인을 없애자는 입장에 동조하는 편이다. 일각에선 수사기법상 포토라인에 한번 세웠다가 들어오면 수사상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제시하지만 표면적으





로는 함구하고 있는 편이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포토라인을 없애고 종이 한 장으로 누가 수사를 받는다는 식으로 통보만 하게 되면 이를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는지, 정말 피의자를 소환했는지, 제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지 등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다. 특히 권력자나 유명인의 경우 그동안 '서면수사', '곰탕집 수사', '몰래 소환' 등 현재의 포토라인 체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꼼수를 부려왔는데, 포토라인마저 없애게 되면 깜깜이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한다.

기자들의 입장에서도 포토라인은 취재의 최전방이자 접근이 어려운 유명 인사들의 반론이나 변명, 해명을 공개적으로 듣고 전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나름 충족시키는 이상과 현실의 중간선으로 믿는다.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와 언론계의 대립 사이에는 불신이 존재한다. 포토라인이 사회적 징벌 성격이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수사하고 판결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상호 이해의 간극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 포토라인이 존재하는 곳은 일본뿐이다. 서양세계에는 포토라인 대신 폴리스라인은 존재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선진국에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절대적 신뢰의 토대 위에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OECD 가입국중 우크라이나와 함께 사법부 신뢰도가 꼴찌 수준이다. 포토라

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 높이가 급선무인 셈이다. 다만 언론의 입장에서 포터라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중 초상권 관련 부분으로는 프라이버시와 동의 등 5개 세부조항을 포함한 제7조 프라이버시 조항을 참고할 만하다.²⁰⁾ 그 주요 내용을 번역, 요약해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1) 방송제작, 보도에 가담하기로 분명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한 사람의 경우, 예상되는 촬영상황에서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 (2) BBC는 비밀촬영에 대한 허락을 받지않는 한, 장소가 어디든 공개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한다. 특히 요즘처럼 BBC의 음향, 비디오 장비가 소형 비디오 카메라, 모바일폰 카메라나 웹카메라처럼 초소형으로 눈에 잘 띄지않는 경우는 특별히 중요하다. 따라서 BBC 제작진은 피보도자에 대해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미리 촬영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3) BBC는 공공장소나 준공공장소에서 주변 장면 촬영을 할 때 우연히 촬영에 노출되는 각 개인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장면촬영에서 그 개인이 초상권 보호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능가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그러나 촬영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며 촬영중단을 요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편집국 차원에서 계속 촬영, 제작하도록 합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앰블런스나 병원, 학교, 감옥소 등 촬영취재에 민감한 장소의 경우, BBC는 일반적으로 촬영취재를 해도 좋다는 동의와 그 촬영물을 보도해도 좋다는 동의 등 두 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촬영, 보도가 정당화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 Section 7: Privacy and Consent 7.4.1 When contributors give informed consent to take part in our output, they can be assumed to have waived their expectations of privacy in relation to their contribution, subject to any agreed conditions placed on their participation. 7.4.2 We should operate openly wherever we are unless we have approval for secret recording.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hen our audio-visual equipment is not very obvious as in the case of small video cameras, mobile phone cameras or fixed webcams. We may need to use notices to make people aware that we are recording and to allow them to avoid us. 7.4.3 When filming openly in public and semi-public places, we do not normally obtain express consent from individuals who are incidentally caught on camera as part of the general scene, unless they are engaged in an activity where they have a legitimate expectation of privacy that is not outweighed by a public interest in showing them.